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

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(정기적성검사)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○공고기간 : 2024.11.17. ~ 2024.11.30.

○대상자 (인적사항)

일련번호	통보번호	성 명	면허번호	면허증 갱신 기간 만료일	조 건 부 취소일자	적용법조
1	2024-01106	김*환	25-09-0341**-**	2023.12.31.	2025.01.01.	

※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면허계(교통계) 운전면허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17일

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